

2017년 5급 일반승진시험 교정학 A책형 해설

- 케이지 패스원, 에듀에프엠 임 현

문 1. 휠러(S. Wheeler)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입소 초기단계에서 후기단계로 갈수록, 친교도관적 태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는가?

- ① -형 직선 ② \형 직선
- ③ /형 직선 ④ U형 곡선
- ⑤ ∩형 곡선

☞ 정답 : ④

☞ 해설 : ④ 휠러(Wheeler)는 수형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본 클레머(Clemmer)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단순히 수형기간이 아니라 수형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그는 수용단계를 초기단계, 중기단계, 말기단계로 나누고, 각 수용단계별로 친교도관적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U형 곡선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형기의 초기단계의 수형자는 친교도관적 태도가 가장 높고, 중기단계의 수형자는 친교도관적 태도가 가장 낮으며, 말기단계의 수형자는 다시 친교도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수형자강령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2. 단기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 주말구금, 휴일구금 등을 통한 탄력적인 구금제도의 활용이 있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 큰 형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③ 단기자유형의 경우 수형시설 내 범죄자들의 범죄성향에 오염될 위험성이 높아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위태롭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 ④ 단기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는 누범문제가 제기되어 3년 동안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단기자유형으로 인하여 수형시설의 부족현상을 가중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불법과 책임에 따라 벌금액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는데,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는 벌금형의 위하력이 약하므로 큰 형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할 수 있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u>	<u>㉡</u>	<u>㉢</u>
① 순회점검	시찰	참관
② 순회감찰	감독순시	견학
③ 순회점검	시찰	견학
④ 순회감찰	감독순시	참관
⑤ 직무감찰	감독순시	견학

☞ 정답 : ①

☞ 해설 : ㉠ 순회점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

㉡ 시찰(동법 제9조 제1항)

㉣ 참관(동법 제9조 제2항)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봉과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②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나 가스총을 발사해서는 안된다.
- ④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 ⑤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제3호).

- ①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 제3호
- ③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 제2호
- ④ 동법 시행규칙 제188조 제4호
- ⑤ 동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전기교도봉 :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함
2. 가스분사기·가스총 :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
3. 최루탄: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함
4. 전자충격기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됨

문 5.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문(Front-Door) 전략은 구금 이전의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등의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원을 줄이자는 것으로 강력범죄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 ② 후문(Back-Door) 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전시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은 형의 선고 시에 수용능력을 고려하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에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는 전략이며, 형사사법협의체의 구성과 형사사법체제 간의 협조를 강조한다.
- ④ 소극적 전략(Null-Strategy)은 수용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잉수용으로 인해 직원들의 재소자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 ⑤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교정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후문(Back-Door) 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여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나 전시제도는 이에 해당하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일정한 선도·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하므로 후문 전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리고 후문 전략은 기존에 수용된 자를 전제로 하므로 형사사법망의 확대와도 관계가 없다.

문 6. 범죄원인론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문제는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② 베버(M. Weber)는 범죄를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이 자기의 생활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정치적 투쟁 내지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③ 볼드(G. B. Vold)는 범죄를 법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본다.

④ 셀린(T. Sellin)은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개별집단의 규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개인도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내면화됨으로써 인격해체가 이루어지고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⑤ 터크(A. Turk)는 갈등의 개연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자 양자의 조직화 정도와 세련됨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갈등이론은 사회는 여러 가지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집단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상위집단이 하위집단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는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범죄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문제가 된다.

문 7.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담당자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 ②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 ③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 ④ 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입
- ⑤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 정답 : ④

☞ 해설 : ④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계약담당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문 8.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① 절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1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소년원 송치를 부과하였다.
- ② 폭력행위를 저지른 15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명령 100시간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라는 병합처분을 내렸다.
- ③ 이전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장기 보호관찰 중인 17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 ④ 16세 보호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수강명령 150시간을 명령하였다.
 ⑤ 아동복지시설 위탁 처분을 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제3항). 따라서 이전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장기 보호관찰 중인 17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①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11세의 소년에게 장기 소년원 송치를 부과한 소년부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②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은 다른 처분과 병합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2항). 따라서 사회봉사명령 100시간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라는 병합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보)
2. 수강명령(수)
3. 사회봉사명령(사)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단)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시)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병)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
9. 단기(6월) 소년원 송치(6)
10. 장기(2년) 소년원 송치(2)

* 소년법 제32조 제2항 :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 보·수·사·단)
2.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 보·수·사·장)
3. 제1항 제4호·제6호 처분 (→ 단·시)
4. 제1항 제5호·제6호 처분 (→ 장·시)
5. 제1항 제5호·제8호 처분 (→ 장·1)

④ 16세 보호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는 있으나(동법 제32조 제2항 제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33조 제4항). 따라서 수강명령 150시간을 부과한 소년부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위탁 처분을 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위탁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문 9.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보호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와 처분결정을 한다.
- ②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소년법 제3조 제3항).

② 동법 제10조

③ 동법 제24조 제2항 :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동법 제40조

⑤ 동법 제43조 제1항

* 소년법 제43조(항고) 제1항 :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문 10. 범죄전이는 개인 또는 사회의 예방활동에 의한 범죄의 변화를 의미한다. 레페토(Repetto)는 범죄의 전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전이의 유형은?

- 범죄자가 한 범죄를 그만두고, 다른 범죄유형으로 옮겨가는 유형
- 침입절도가 목표물을 견고화하는 장치에 의해 어려워졌을 때, 침입절도 범죄자들은 대신 강도범죄를 하기로 함

① 공간적(territorial) 전이

② 시간적(temporal) 전이

③ 전술적(tactical) 전이

- ④ 목표물(target) 전이
- ⑤ 기능적(functional) 전이

☞ 정답 : ⑤

☞ 해설 : 레페토(T. A. Reppett)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한계로서 범죄의 전이현상을 주장하였다. 즉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은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전이현상을 통하여 공간적·시간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전체의 범죄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범죄의 전이현상을 공간적(=지역적) 전이(territorial displacement), 시간적 전이(temporal displacement), 전술적 전이(tactical displacement), 목표물의 전이(target displacement), 기능적 전이(functional displacement)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공간적 전이는 범죄자들이 범죄의 장소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바꾸게 되는 것을 말하며, 시간적 전이는 범죄자들이 낮에 저지르던 범죄를 저녁 때로 바꾸는 것과 같이 범행의 시간대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전술적 전이는 강도가 칼을 사용하다가 총을 사용하는 것처럼, 범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바꾸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목표물의 전이는 범죄자들이 범행의 대상, 즉 피해자를 한 가지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능적 전이 절도를 범하던 범죄자들이 강도를 범하는 것처럼 범죄의 유형을 다른 범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⑤ 설문의 내용은 범죄자가 절도에서 강도로 범죄유형을 바꾸는 경우이므로 기능적 전이에 해당한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의 제외 또는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 ②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 ④ 수형자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 ⑤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 정답 : ③

☞ 해설 : ③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2017.8.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류심사의 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다.

①, ②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호(분류심사의 제외대상)

④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1호(분류심사의 유예대상)

⑤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2호(분류심사의 유예대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삭제 <2017.8.22.>

- 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 법 제10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이상 남은 수형자도 작업 부과와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될 수 있다.
- ⑤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

①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4호

③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

④ 소장은 제1항(외부통근작업대상자 선정요건) 및 제2항(개방지역작업대상자 선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⑤ 동법 시행규칙 제123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②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 ③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 ④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 정답 : ①

☞ 해설 :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4항).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이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뇌물관련범죄들이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문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형사조정제도
- ② 배상명령제도
- ③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④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
- 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지원

☞ 정답 : ②

☞ 해설 : ②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제35조).

- ① 형사조정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 제41조 ~ 제46조)
- ③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동법 제4장 제16조 ~ 제32조)
- ④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동법 제15조)
- 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지원(동법 제5장 제33조 ~ 제40조)

문 15. 범죄학이론 중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이론은 1990년대 샘슨(R. Sampson)과 라웁(J. Laub)이 1930년대 글뤽(Glueck) 부부의 연구를 재분석하며 활성화된 이론이다.
- ② 범죄자의 삶의 궤적을 통해 범죄를 지속하는 요인과 중단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
- ③ 심리학자 모핏(Moffitt)은 범죄자를 청소년한정형 범죄자와 인생지속형 범죄자로 분류하면서 이들 중 인생지속형 범죄자는 아주 이른 나이에 비행을 시작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지속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 ④ 인생지속형 범죄자보다 청소년한정형 범죄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 ⑤ 발달이론에서 범죄경력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결혼, 취직 등이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모핏(Moffitt)은 소년비행을 생애지속형 범죄자(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s)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adolescent-limited offenders)의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하였다.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훈육과 신경심리계의 손상으로 충동적이고 언어·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하며, 이러한 아이들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며,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는 청소년기에 약물·음주관련 범죄, 재물손괴, 절도 또는 가출·무단결석 등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표출하는 범죄행동을 시작하되, 성숙해짐에 따라 어른이 되어서도 범죄행동을 지속한다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통 18세 전후에 범죄행동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양식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보다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 ㄴ.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ㄷ.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ㄹ.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 ㅁ.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
| ㅂ.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 ③ ㄴ, ㄷ, ㄹ, ㅁ ④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ㅂ

☞ 정답 : ⑤

☞ 해설 : ⑤ 옳은 것은 ㄱ, ㄴ, ㄷ, ㅂ이다.

ㄱ.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ㄴ. (○) 동법 제35조

ㄷ. (○) 동법 제36조 제1항

ㄹ.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ㅁ. (×)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를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85조).

ㅂ. (○) 동법 제39조 제2항

문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②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⑤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 해설 : ⑤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2.5.24. 2012도2763).

② 동법 제50조 제3항 제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2012도2763).

④ 동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문 18. 현행법상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형법」 제59조의2에 의한 선고유예자인 경우
- ㄴ. 「형법」 제73조의2에 의한 가석방자인 경우
- ㄷ.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 대상 소년으로 12세인 경우
-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의 보호처분을 할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 정답 : ①

☞ 해설 : ㄱ.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ㄴ.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ㄷ. (×)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1호·제2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3항). 따라서 12세 소년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는 없다.

ㄹ.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는 거실 및 작업장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 ③ 공소장이나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 적용된 수용자라 할지라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이외에는 석방 때까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 ⑤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 ⑤

☞ 해설 :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단서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분류심사의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97조).

②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규칙 제200조).

③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 3.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④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나, i)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상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9일 이하의 금치,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다.
- ②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 ③ 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와 재난 시 응급용무 보조에 공로가 있는 때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⑤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을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 실효기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1.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 2년 6개월
 -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 2년
 -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 1년 6개월
 - 라. 9일 이하의 금치 : 1년
2.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 2년
3.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 1년 6개월
4.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접견·서신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 1년
5. 징벌대상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30일 이내의 접견·서신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작업정지,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 열람 제한, 공동행사 참가 정지 및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경고 : 6개월

②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3항).

③ 법 제106조 제1호(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및 제2호(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동법 시행규칙 제214조의2 제1호).

* 포상기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의2)

1. 법 제106조 제1호(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및 제2호(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2. 법 제106조 제3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및 제4호(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4항). 이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⑤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을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제2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 :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을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문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⑤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 ① 동법 제59조 제1항
- ② 동법 제59조 제4항
- ③ 동법 제60조 제1항·제2항
- ⑤ 동법 제62조 제3항

문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 제1항).

- ① 동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1호
- ③ 동법 시행규칙 제146조 제2항
- ④ 동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1항 제1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회의) 제1항 : 협의회는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할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⑤ 동법 시행규칙 제148조 제3항

문 23.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
| 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

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금지기간 중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ㅁ. 징벌협의를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 정답 : ③

☞ 해설 : ③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ㄱ. (○)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정원 6명)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잡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ㄴ. (○)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6.30. 2015헌마36).

ㄷ. (×)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지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지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

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지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5.26. 2014헌마45).

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 및 제162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243).

ㄷ. (○) 징벌협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에 비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9.25. 2012헌마52).

문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징벌대상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하면 소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 ⑤ 5개

☞ 정답 : ②

☞ 해설 : ○ 징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2항

○ 징별위원회의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동법 제111조 제2항).

○ 징별위원회는 소장의 징별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동법 제111조 제3항

○ 징별대상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하면 소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징별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1조 제5항).

○ 징별위원회는 징별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징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별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111조 제5항). 형집행법에 위원회가 불리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징별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를 할 때 출석통지서에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27조 제2항 제6호).

문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체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 및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

③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유치장에 수용된 여자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위법하다.

④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을 조망할 수 없게 하고 원활한 통풍과 최소한의 채광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행위는 수용시설의 목적 달성을 넘어 지나친 것일 뿐 아니라,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수용자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휴기 등을 건넌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2001.10.26. 2001다51466).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3항).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10.25. 2009헌마691).

④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전체 자살사고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안전철망의 구멍의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크고,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 내지 1시간에 이르는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설치행위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6.26. 2011헌마150).

⑤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항문 부위에 대한 금지물품의 은닉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그 수단이 적절하다. 교정시설을 이감·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취득하여 소지·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외부관찰 등의 방법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고지한 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받는 사람의 모욕감 내지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체검사로 인하여 수용자가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휴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된다.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5.26. 2010헌마775).